

# 육아정책연구소 종합감사 결과

## 1. 감사 개요

- (실지감사) '17.7.12. ~ '17.7.25(10일간)
- (감사대상) '13.1.1 ~ '17.5.31(4년간), 연구소 기관운영 전반

## 2.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### 기관장 비위사항 ⇒ 연구회에 신분상 제재\* 요구

- \* 연구회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7조(위반시 제재 등) 해임, 퇴직금·연봉의 감액 또는 환수, 경고, 주의

### ①-1 남편 운영 회사의 자문기관으로 연구소 명칭 사적 활용\*

- \* 행동강령 위반

### ①-2 연구연가(1년) 대상자 부당 선발 및 교체\*

- \* 연구연가 미자격자(C등급이하 평정자)를 선발('15.7.24)하고, 연구연가 하루 전('15.12.31) 대상자 교체

### ①-3 공용차량 사적 사용\*

- \* 연가일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(5회) 하고, 근무시간에 여고 동창회 행사 등 참여(11회)

### ①-4 부서장(실장) 보직 부당 임용\*

- \* 「연구위원」으로 임용하여야 할 실장 직위에 무보직 및 팀장(실장 하위직) 연구위원이 6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부연구위원을 임용

### 인사·복무 분야

### ② 연구원 특별채용 절차 운영 부적정\* ⇒ 개선(관련규정 폐지)

- \* 소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전형위원을 통해 특별채용하는 인사규정 운영

③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\* ⇒ 문책(1명), 주의(5명)

\* △소장의 지시를 받고 평정요건 미달자를 연구연가 대상으로 선발  
△외부 면접 전형위원에 특정대학 출신 편중 선정(9명/21명, 43%) △인사  
위원회 간사인 총무인사팀장을 인사위원으로 겸직 임용

④ 부서장(실장) 보직 부당 임용\* ⇒ 통보

\* 「연구위원」으로 임용하여야 할 실장 직위에 무보직 및 팀장(부서장  
하위직) 연구위원이 6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부연구위원을 임용

⑤ 대외활동 신고의무 위반\* ⇒ 통보(자체 문책)

\* 소장의 승인을 받지않고 대외활동 수행(8명, 19건)

⑥ 해외출장 보고서 지연 제출\* ⇒ 통보, 주의(3명)

\* 총 35건 (제출기한 보다 31일이상 지연 제출자 3명 '주의' 조치)

⑦ 재택근무제도 편법 운영\* ⇒ 통보

\*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모든 연구원에게 연간 12일의 재택근무 일괄 부여  
(149건, 연가일수 증가 용도로 활용)

□ 예산집행·계약관리 분야

⑧ 직원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부당 운영\* ⇒ 개선(폐지)

\* 기획재정부의 「방만경영정상화계획 운용지침」 위반  
(자녀 출산시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 지급)

⑨ 수탁 연구과제 관리 소홀\* ⇒ 통보, 주의(1명)

\* 외부 수탁연구 과제 변경에 필요한 절차(계약서 수정 등)를 이행하지 않아  
패널티(수탁참여 제한, 간접비 반환 등)

⑩ 기타 계약관리 미흡\* ⇒ 통보

\* 선금지급시 보증보험증권 미구비(6건), 검사 지연(24건) 등